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2 선고 2021나30624(본소), 2021나311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2 선고 2021나30624(본소), 2021나31122(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2174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변론 종결2022. 3. 8.

판결 선고2022. 3. 22.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9. 선고 2020가단21741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20,9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E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를 두었고, 이후 1995. 11. 27. F와 혼인하였으며, 2018. 11. 28. 사망하였다.

나. D는 1993.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와 F는 2019. 1. 7. 위 부동산을 F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F는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20. 6.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증여약정서에는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인 'G동 H호'가 아니라 'I동 H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약정서에 기재된 'I동'은 'G동'의 오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인으로서 증여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유류분인 각 1/4 지분을 원물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본소 항변), 적어도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인 각 20,986,2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반소 청구원인).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는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 - 상속채무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F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 ② 121,950원 상당의 J 주식회사 책임준비금, ③ 1,400,106원의 K 증권계좌 보유액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F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13,000,000원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은 114,522,056원(= 121,950원 + 1,400,106원 + 113,000,000원)이다.

(나) 상속채무액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사망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27,533,143원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채무액에 2020. 7.경부터 10.경까지 변제한 이자 558,76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F 사망 이후 발생한 이자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1,977,520원, 개별난방 전환비용 1,906,647원 합계 3,884,16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F의 상속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은 86,988,913원(=114,522,056원 - 27,533,143원)이다.

3) 유류분비율(B) 및 유류분액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의 유류분율은 각 $1/4$ (= 법정상속분 $1/2 \times$ 유류분 $1/2$)이고, 유류분액은 각 21,747,228원(= 기초재산 86,988,913원 $\times$ 유류분율 $1/4$, 원 미만 버림)이다.

4) 순상속분액(D) 가) F의 상속재산은 원고에 대한 증여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1,522,056원이고, 달리 피고들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1/2$)과 같다. 결국 피고들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은 각 761,028원(= 1,522,056원 $\times 1/2$)이다.

나) 피고들의 상속채무분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사망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27,533,143원의 주택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F의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7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위 주택연금은 D가 1993. 2.경부터 지급받던 중 사망하자 F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2019. 3.경 승계한 것인 점, F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소액의 금융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1. 7.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20. 6. 5. 간암으로 사망한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F로 하여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원고가 피담보채무인 주택연금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증여자인 F의 의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 이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증여 목적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여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취지 참조).

다) 결국 피고들의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D)은 각 761,028원이다.

5) 유류분 부족액 그렇다면,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0,986,200원(= 21,747,228원 - 761,028원)이다.

다. 유류분의 반환방법 및 범위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하도록 정한 부담으로 봄이 타당한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 사망 이후인 2020. 7. 6.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들은 반소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각 20,9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들인 주택연금채무 원리금 28,091,903원, 관리비 등 3,884,167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원고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므로 관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F에게 아무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F를 부양했던 원고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 참조), 피고들과 F가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들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각 20,9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에게 가액 반환의무만이 인정되고 원물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조영인

판사임세영

별지